# 東歐諸國의 投資 環境과 外國人 投資 現況

## 1. 概 觀

동독과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구권국가들은 1968년 유고를 시초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으며, 80년대에 들어서는 외국인투자 조건을 완화하는 등 외자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소련도 1987년 1월1일부터 외자도입을 허용하였다.

가. 동구의 합작투자의 의의

동구에서의 합작투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자본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레닌은 자본주의가 멸망하는 최후의 단계를 자본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레닌의 이론에 따르면 동구권국가들의 합작투자는 바로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병리적 현상 중의 하나이며, 이는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경제 이데올로기를 부분적이나마 부정한 것이다.

나. 합작투자 유치의 목적

-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상품수출의 증대
- 새로운 시장의 개척
- 수출입에 있어서 지불 조건과 수출입가격의 개선
- 상업적, 재정적 활동의 도입으로 외화 획득
- 외국소비자들에 대한 직접판매 가능성 제고
- 자국의 인력훈련
- 새로운 자원의 확보

다. 동구제국의 합작투자사업 내용(추진 또는 희망분야) 및 성격

- 기존산업의 확장과 근대화
- 생산성, 품질 및 아프터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선진기술과 설비재의 도입
- 수출의 확대, 해외시장 다변화 및 외화획득이 높은 산업 육성
- R&D 관련산업
-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 2. 國別投資環境 및 外國人投資 動向

가. 헝가리

최초의 합작투자의 시도는 1968년 경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공포된 1970년 제19호 법령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수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은 1986년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재무부 명령 제42호(1985년 발표)이며 동 명령에 의하면, 해외투자의 기본출자금은 적어도 4만내지 5만달러 이상 이어야 하며, 총자본금의 1/3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후 최초 5년은 이익금에 대한 20%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6년째부터는 3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합작회사가 세금을 공제한 수익의 50% 이상을 재투자하거나 혹은 500만 forint(1$US=44.88 forint, 1987년2월11일 현재) 이상을 재투자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50%를 반환해 주는 특

편집자 주 : 本稿는 현재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동구지역에 대한 자료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1988년 8월에 발행한 「소련 및 동구의 개방화 정책과 한국의 대응」 중에서 동구제국(제3장)편을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세금을 공제한 수익의 100%를 재투자하거나 100만 forint 이상을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세금의 75%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특정 분야에 투자할 경우 최고 5년간은 면세해 주고 6년째부터는 수익금의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혜가 부여되는 투자업종은전자공업 부문(자동화와 제어장치의 생산),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기계부품 생산 업종, 포장기술 부문, 의약품제조 및 동제품의 중간생산물 제조, 고급섬유와 고급의류 생산, 식품가공의 현대화와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수출목적과 수입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및 식료품산업에의 기초투자, 원료나 에너지 절약을 포함하는 기술, 마케팅과 생산에 있어서 광고매체 등이다.

헝가리의 합작투자 실적은 1980년까지는 3건에 불과하였으나, 1980~1986년말까지는 52건에 이르고 있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86년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령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설립된 합작기업은 대체로 50%이상이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제조된 상품의 수출을 위한 서비스분야,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서비스 산업분야에는 수출 목적 뿐만 아니라 수입을 위한 주원자재나 부품의 직접도입을 위한 합작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표-1 헝가리 합작기업의 성격별 분류

| 투자분야 | | 건수 |
|---|---|---|
| 제조업 | 산업용생산재 | 18 |
| | 소비재 | 6 |
| | 소 계 | 24 |
| 건설산업과 동부문관련 기술서비스 | | 3 |
| 판매 및 동부문관련 서비스 | | 7 |
| 컨설팅, 컴퓨터, 금융부문 | | 4 |
| 디자인 연구와 관련엔지니어링 | | 3 |
| 관광산업부문 | | 3 |
| 금융 및 은행 | | 2 |
| 총 계 | | 46 |

자료 : UN : joint ventures with the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of the Socialis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UNCTAD/ST/TSC/520 June 1986

합작기업의 지분율은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된 초기에는 대부분이 외국자본으로 구성(예 아디다스·헝가리사는 아디다스측이 51%의 지분율 소유)되었으나, 점차 50대50으로 지분율의 균등화를 꾀하고 있다. 합작기업의 지분율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관계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나. 불가리아

불가리아에서의 합작기업의 설립은 1980년의 법령 제535호인 "불가리아 법인과 외국의 법인, 자연인과의 경제협력법"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81년에 3건, '83년 1건, '84년 3건, '85년 1건으로 '85년말까지 모두 8건의 합작기업이 설립되었다.

이 법의 시행목적은 생산의 과학적,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상품의 질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수출의 확대가능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외화의 획득과 무역수지 균형을 도모하는데 있다.

불가리아의 경제협력법, 합작투자법은 외국의 투자자에게 법적, 재정적 편의뿐만 아니라, 신용보증, 통관 절차, 관세율 등 많은 분야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다. 또한 외국투자자에게 합작기업의 지분율 50%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과세 후 이익금을 송금할 수 있게 하였다. 설립한 기업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지분율 만큼의 자본 회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외국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불가리아측 파트너나 타불가리아 법인에 자신의 자본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85년말까지 불가리아에 투자한 외국인투자 건수는 8건으로 일본 3건, 미국 2건, 스위스, 프랑스, 영국이 각각 1건이며, 모두 높은 기술수준의 Know-how, 설비재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중 6개 합작기업 분야는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디자인과 Projecting 설비재의 공급, 인력 훈련과 서비스를 취급하는 사업이며, 구체적인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 기계제작과 관련 전자산업 부문
- 전기기술산업과 전자
- 제3국 시장 진출과 고급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기계의 대여

- 라이센스 교환, Turn－key Projecting
- 컴퓨터 시스템, 기술적 프로세스의 자동화
- 화학, 의약품, 농업
- 생물공학, 에어콘설비, 식품산업

다. 체코슬로바키아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체코의 전기에너지, 석유정제, 천연자원가공섬유, 가죽생산공업 등은 지난 25년 동안 서구선진국의 주요 공급자 역할을 해왔었다. 그러나 체코 정부도 산업능력의 근대화 수출잠재력의 향상을 위해 1972년에 외국투자자와 산업협력을 추진하였으나 합작투자회사 설립은 체코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만 허용하였다.

그러나, 1986년부터는 외국자본의 도입을 허용함으로써 본격적인 합작기업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1986년10월 체코의 Tesla사와 덴마크의 Senetek사간에 Tessek사라는 합작회사를 최초로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생물공학설비와 프로세스의 생산, 공동연구를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지분율은 체코측이 51%를 소유하고 덴마크측의 Senetek사는 연구소 설비와 재정부담을 하는 조건이었다. 세금은 이윤의 40%가 부과되며 고용인의 임금은 체코화폐로 지불하고 사장은 체코인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른 합작기업으로는 일본의 도시바와 Tesla사간 가정용 비디오기기를 제작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Philips사와 서독의 Grundig사가 가전제품 생산공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 폴란드

폴란드는 1976년5월14일 법령 제19호로 수공업, 호텔, 식당등 각종 서비스부문에 대해 제한적인 외국인 합작투자를 허용하였다.

이 법안은 1979년2월7일 법령 제24호에 의해 대폭 수정되어 본격적인 외국인투자를 유도하였다. 이 법에 의한 합작기업은 근대적 기술이나 기술공정의 도입, 현지 천연자원의 사용을 추천하는 분야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수출과 국내시장을 위한 생산이 주목적이었다.

합작기업의 지분은 폴란드측이 51%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였으며 물품의 구입이나 판매는 폴란드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도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1982년6월 제146호 법령으로 대체되었으며 이 법령은 소규모 법인이나 자연인에 의한 합작기업의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에게 보다 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이 법령은 외국에 거주하는 폴란드계 이민들(Polonia)의 모국투자를 적극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1984년3월까지는 단 1건의 실적밖에 없었다. 그러나 외국거주 폴란드인들의 투자는 2년 사이에 3배가 증가하여 무려 550건에 달했으며 현재까지 약 700건에 달하고 있다.

1982년의 합작투자법도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큰 매력을 주지못하자 폴란드 당국은 1985년 전문을 개정하여 투자의 하한선을 690만 Zolty(1 $US=197.50 Zolty, 1987년1월5일 공식환율)로 낮추었으며, 1986년4월에도 세제를 비롯한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 수정안에서도 지분율은 폴란드측이 51%를 보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는 50%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합작기업의 수출액의 1%마다 세금은 0.4% 공제해 주는 유인정책을 채택하였다.

대폴란드 합작투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합작회사가 수출해서 획득한 외화의 25%는 폴란드 공식환율에 의거 폴란드 국내로 환류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더우기 1979년의 법안의 투자후 1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투자의욕을 저상시키고 있다.

1986년 새로 개정된 법안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불이익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마.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동구에서 제일 먼저 합작투자를 허용한 국가이며 1972년부터 시행된 합작기업법은 수출증진, 신기술도입이 주요 목적이었으며, 주요 대상분야는 공업, 농업, 관광, 건설, 수송,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연구활동 등이다.

합작기업의 지분율은 루마니아측이 51%를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윤은 세금을 공제한 후 일정 비율의 기금을 보유하거나 재투자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실송금을 허용하였으며 합작기업의 활동내용과 재정상태에 대한 년간, 5개년계획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공포되자 서구선진국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였으나 1977년 이후 신규투자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투자된 건수는 모두 9건이며 이중 계속되는 기업은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바. 동독

동독은 아직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으로 합작투자에 의한 합작기업의 설립은 불가능하다.

단지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기업간의 협력, 콤비나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과 생산의 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기업협력과 같은 수준에서 외국과의 관계를 맺는 데 불과한 실정이다.

## 3. 最近 對東歐 投資現況

소련을 비롯한 동구제국의 경제개방화 추세에 따라 동서간의 합작투자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구권 국가들은 서방선진국의 선진공업기술 및 외자가 절실히 필요한 반면, 서방기업들은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가 상호보완관계에 있어 합작투자업종은 컴퓨터, 자동차에서부터 햄버거와 블루진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엔유럽경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1년도에 등록된 동·서합작회사의 수는 5개뿐이었으나, 87년 한해 동안에 91개가 신규로 등록되었으며, 87년말 현재 기술, 경영, 자본투자를 합친 동·서합작회사는 모두 116건에 5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88년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88년3월말 현재 소련의 14건을 포함하여 누계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합작투자형태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무역, 관광, 금융 순이다.

서방국가중 합작투자규모가 큰 국가는 서독이다. 이는 서방측의 경제적 비중과 동·서독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서방 선진국 외에도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리비아 등도 대동구 합작투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동구제국 중 서방선진국에 가장 인기있는 투자대상국은 헝가리로 다국간합작회사가 111개나 되고 있으며, 다음은 소련으로 33개, 폴란드 19개 순이며 폴란드의 경우 합작회사와는 별도로 해외거주 폴란드인의 자본 참여로 설립한 중소기업체수가 7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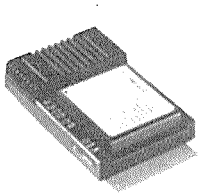
최근 동·서합작투자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서방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인 투자에 주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공산국가들의 대외개방이 정착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상호 자유무역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